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정하고 있는 직급 기준을 조정하고,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시 보고범위 및 절차에 있어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며,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를 군수품으로 포함하는 한편, 군수품의 교환 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을 추가하고, 수출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무상대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수품관리법」 상 군수품에 소프트웨어를 추가(안 제1조의2 및 제50조)

-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부 및 국방에서도 물품관리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군수품관리법」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에서도 물품으로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군수품관리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를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전비품에 추가하여 소프트웨어가 군수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품인 소프트웨어도 관리되도록 규정함.

나. 군수품 관리사무가 위임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보고절차 및 범위 개선 (안 제4조)

- 1)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성명, 계급, 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효용성이 떨어져 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물품관리법 시행령」도 유사 규정을 1988년 법률 전부개정 시 개선한 바 있음.
- 2)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간 위임 등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주고, 타 중앙관서 또는 타 군 또는 기관 간 위임 등에 대해서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을 간소화함.

다.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요건 조정 (안 제6조)

- 1) 물품관리관의 자격을 5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지정하여, 물품관리관이 될 수 있는 군무원의 직급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물품출납공

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자격을 영관급, 준사관,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높게 정하여 실제 운용하고 있는 기관 및 부대에 애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물품관리관의 자격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 명확히 정하고,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장교, 준사관,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이 물품출납, 물품운용 등의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함.

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 (안 제28조)

- 1) 군수품을 국가 외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좁게 정하고 있어, 방산수출 진흥 등의 정책적 측면에서 군수품 대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는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방위산업체 등에서 제기함.
- 2) 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탄약에 한정하던 것을 군수품 전체로 확대함.

마. 교환에 필요한 승인 사항에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 추가(안 제32조)

- 1) 군수품 교환 시 승인 기준에 대하여는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 및 상기 법률들의 하위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군수품관리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군 또는 업체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발생가능한 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군수품의 교환 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을 추가함.

바. 관급품의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방식 확대(안 제44조)

- 1) 방위사업법 제43조는 군수품관리법상 지급보증 가능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방위산업진흥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이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은 이를 포함하지 않아 업무관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2)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조치에 방위사업법 상 지급보증 수행 기관의 지급보증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로,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을 “위임”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를 “분장하게”로,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하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준사

관, 7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을 “장교, 준사관,”으로 한다.

제28조제9호 중 “탄약”을 “군수품”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단서”를 “단서 또는 「방위사업법」 제45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에 따른 가액과 제4호에 따른 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

제4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제5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프트웨어

③ 군수품 중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원으로서 동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 (생략)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포 함한다) 및 이에 포함되는 소 프트웨어----- --
② (생략)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법 제2조의 국방관서(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 ----- ----- ----- ----- -----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리
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한 사무
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
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
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6
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
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
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
하게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공무원의 성명
과 계급·직위 및 위임 또는 대
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려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국방부장
관(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
장을 먼저 거쳐야 한다)을 거쳐
미리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 위임 또는 대리하
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여야 하
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사원

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

----- 위임 -----

----- 하
-----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illegible]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① -----

분임자 또는 대리자(이하 “물품 관리공무원”이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5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2.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포함한다):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준사관, 7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

②·③ (생략)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8. (생략)

9. 군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하여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

10. (생략)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

1. -----

----- 일반
직공무원 -----

2. -----

----- 장교, 준사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

-----.

1. ~ 8. (현행과 같음)

9. -----
----- 군수품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8.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44조(관급품의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2. (생략)

절차) ① -----

----- 단서 또는 「방위사업법」 제45조 제4항-----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에 따른 가액과 제4호에 따른 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관급품의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략)

제50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8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신 설>

② (생략)

<신 설>

3.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4. (현행 제3호와 같음)

[illegible]

1. ~ 6. (현행과 같음)

7. 소프트웨어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품 중 제1항 제7호에 따
른 소프트웨어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

	<u>화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원으로서 동법 및 그 하위법 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수기획과	
연 락 처	(02) 748 - 5711